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37481 부당이득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소송대리인 B, C

변 론 종 결 2021. 4. 1.

판 결 선 고 2021.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1,097,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6

1. 인정되는 사실

가. 소외 D(E생)은 1993. 6. 4. [redacted]시 F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건물을 완공한 뒤 1994. 3. 17.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위 신축건물의 지층 부분은 그 용도를 '위락시설'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D은 1994. 5. 27. 위 신축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당시 그 등기부상 표제부에는 지층의 용도가 '위락시설(주점영업)'으로 등기되었다.

나. 위 신축건물 중 지층 부분의 용도는 1998. 5. 8.경 '위락시설'에서 '노래연습장'으로 변경되었고, 현재 위 건물의 현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소외 G(H생)은 2009. 6. 10.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소외 I(J생)이 2011. 10. 26.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원고(K생)는 2014. 10. 8. 위 건물에 관하여 2014. 8.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대상인 '위락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부터 2019년도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부과된 중과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마. 한편, 관할관청은 1987. 9. 18. 소외 L(M생)에게 'N'이라는 업소명으로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영업 형태: 룸살롱)을 하는 것을 허가하였고, 이후 영업자 및 업소명의 순차 변경을 거쳐 1994. 3. 21. 위 허가받은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소재지가 이 사건 건물의 지층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지층에 관하여 'O'[1]라는 업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6

명으로 유흥주점영업(영업 형태: 룸살롱)의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그 지층의 용도가 '노래연습장'이었음에도, 피고는 그 지층의 용도가 '위락시설(주점영업장)'인 것으로 오인하여 위 건물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취급한 뒤 그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또 그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중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위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피고에게 납부한 중과세액의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41,097,472원이다.

순번	세 목	시 기	세 액
1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2014. 10.	14,939,260원[1]
2	재산세 중과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015. 7.	5,694,170원[2]
3	재산세 중과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016. 7.	5,404,639원
4	재산세 중과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017. 7.	5,069,141원
5	재산세 중과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018. 7.	4,994,904원
6	재산세 중과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019. 7	4,995,358원

○ 따라서 원고의 납세액 중 중과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과세액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2009. 7. 29.자로 그 업소명이 변경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6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층에서 실제로 위락시설이 운영되어 오고 있었으므로 그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현황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임대가 원활하지 않아 그 지층 부분을 공실로 유지하여 온 기간이 장기간인 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한 점(즉,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에도 관할관청이 관리 소홀로 인해 기존의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다), 피고의 실질과세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실질과세 주장은 부당하다.

○ 나아가, 피고가 일부 청구채권(취득세 관련 청구채권)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항변하고 있으나, 원고가 그 환급 사유를 알게 된 2020년 7월경을 소멸시효 진행의 기산일로 삼아야 할 뿐 아니라,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도 부당하다.

3.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급부부당이득이 문제가 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

2) 한편,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등 참조),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그 건물 내부에 유흥주점영업장 시설을 갖추고서 그 영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6

허가를 받아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해당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다른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2] 위와 같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고, 이는 가사 건물의 취득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 건물을 취득하였다거나 그가 고급오락장 영업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또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위 취득세에 관한 법리는 재산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중과세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의 지층에 관하여 유흥주점영업의 허가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음은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한다. 또한,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지층 부분에 유흥주점업소로서의 각종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피고의 소속 직원은 2020. 10. 14. 이 사건 건물의 지층을 방문하여 현장사진을 촬영하였는바, 그 촬영

2) 그 예외적인 사정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6

당시에도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0. 8. 이후로도 위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유흥주점업소가 운영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도 위 지층 부분에서 유흥주점영업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제3회 변론조서 등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층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인 소외 P(Q생), 소외 R(S생), 소외 T(U생)은 순차로 위 유흥주점영업에 관한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왔다. 또한, 원고와 위 R 사이의 2019. 6. 17.자 임대차계약서에는 '불법영업(미성년자에게 술 판매, 성매매)으로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될 경우에는 임차인이 손해배상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사항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가 임차인의 유흥주점영업을 적극적으로 용인한 것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그 건물 소유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089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의 사용, 수익을 용인하고서 이를 전제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피고의 중과세 부과가 원고의 법적으로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였다는 등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층이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음을 전제로 중과세액을 납부한 것이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노래연습장'이 아닌 '위락시설'일 것을 신뢰하고서 그 중과세액을 납부한 것이 아니다).

○ 나아가 건축물의 현황이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이상, 설령 유흥주점영업이 일시 휴업중인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누263 판결의 취지 등 참조), 가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6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건물의 지층이 공실로 있었던 기간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위 지층 부분이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에 대한 중과세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6

별지

목 록

[redacted]시 F

[도로명주소] [redacted]시 V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3층 숙박시설(여관) 및 노래연습장

지층 249.90㎡ 노래연습장

1층 192.78㎡ 숙박시설(여관)

2층 192.78㎡ 숙박시설(여관)

3층 192.78㎡ 숙박시설(여관). 끝.